

# 2026년 지역·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전라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「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」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4. 30.

(사)전남여수산학융합원

## 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
- 지원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

조 건	내 용
주소지	▶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)
기업규모	▶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) ※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※ 사업장 총괄카드 "대규모"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▶석유화학(연관)기업: 기업 리스트 확인,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※ 전남일자리정보망 및 전남여수산학융합원 홈페이지 게시

### 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

- 1)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석유화학업종(C19, C20, C22) 해당 기업
- 2)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, 종목이 석유화학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
- 3)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여수시 석유화학업체(C19, C20, C22)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 
※ 거래관계서류(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 및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증빙
- 4)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,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(업종), 국세청 업종코드(업태 및 업종),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 
※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기업 리스트 게시(전남일자리정보망 및 전남여수산학융합원 홈페이지 게시)

□ 지원내용 : 고정노동비용(최대 1,500만원) 지원

※ 지원한도 : 전체 근로자의 50% 이하,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

○ (지원항목)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(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)

구 분	지원항목
퇴직연금 기여금	▶퇴직연금(DB, DC형) 사업주 부담 납입금
사회보험료	▶매월 지출되는 근로자 사회보험료(국민연금, 고용보험) 사업주 부담분
건강검진비	▶기업-병원 계약,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사업주 부담분
기타	▶기업체 내규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고정노동비용 사업주 부담분(피복비 및 안전장구류, 법정 의무교육 등)

○ (인정범위) 2026. 1. 1.부터 접수일까지 사업주 지출 내역만 인정

구 분	증빙자료
퇴직연금 기여금	▶금융기관 발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, 가입자 명부, 이체확인증
사회보험료	▶사회보험료(국민연금, 고용보험)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※ 국민연금 : ①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②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※ 고용보험 : ①보험료완납증명서, ②부과고지 보험료
건강검진비	▶병원계약 : 견적서, 계약서, 이체증,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▶실비정산 : 이체증, 영수증,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
기 타	▶피복비 및 안전장구류, 법정 의무 교육비 등 ※ 계약서,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, 해당근로자 교육 수료증

※ 신청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

※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서가 없을 경우,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

※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□ 지원절차



## 2

## 신청 및 모집공고

□ 신청기간 : 2026. 5. 7.(목) ~ 2026. 5. 29.(금)

○ 온 라 인 : 2026. 5. 7.(목) ~ 5. 29.(금)

○ 오프라인 : 2026. 5. 14.(목) ~ 5. 29.(금)

□ 모집기업 : 100개사

○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,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

### 우선순위 기준

① 1순위 :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하락률이 큰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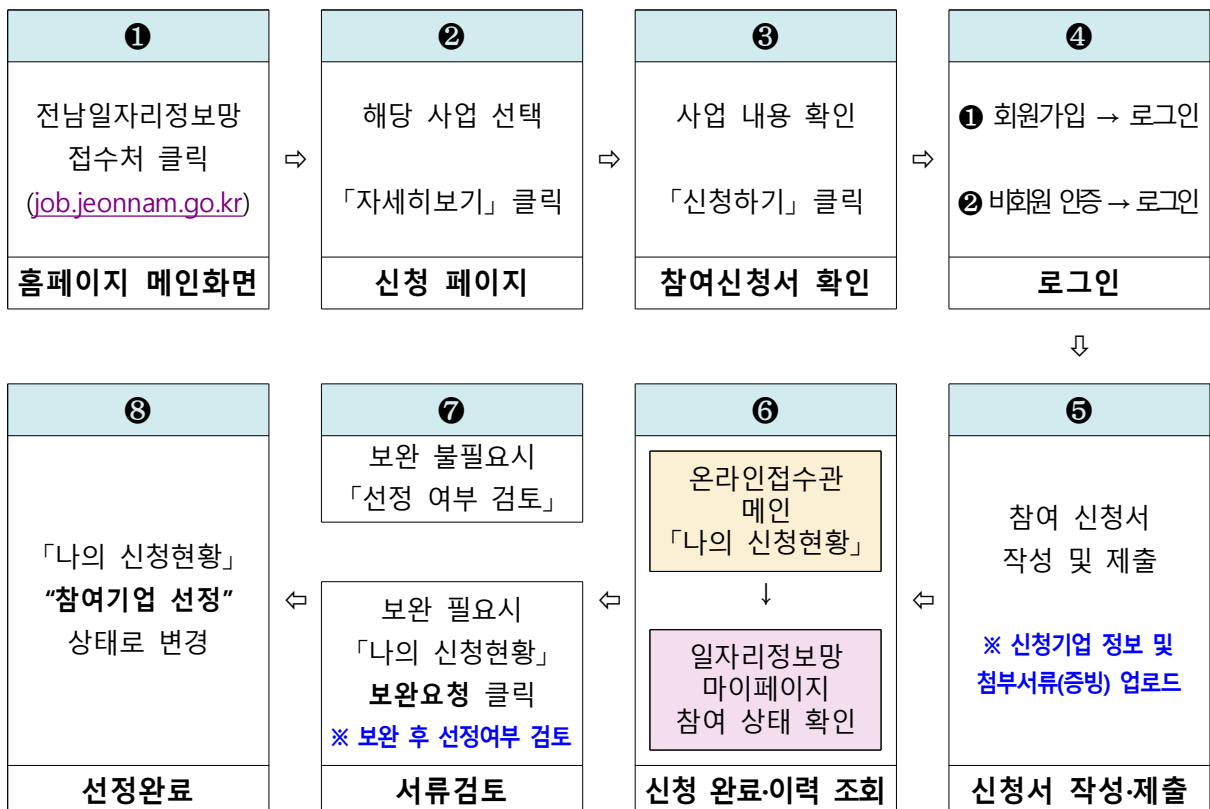
② 2순위 :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액이 큰 기업

※ 동일한 조건의 경우 1) 여수시 소재 업력이 오래된 순, 2) 피보험자 수가 많은 순

※ 매출은 "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2024~2025년)" 등으로 확인함

□ 신청방법

○ 원 칙 : 온라인 접수(2026. 5. 7.(목) 09시부터 ~ 5. 29.(금) 17시까지)



○ 예 외 : 오프라인 접수(2026. 5. 14.(목) 09시 ~ 5. 29.(금) 17시까지

- 신청장소 : 전남여수산학융합원 604호(여수시 삼동3길 17 기업연구관)

- 신청 가능 시간 : 월~금 9시~17시(점심시간(12시~13시) 및 법정공휴일 제외)

- 신청방법

▶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,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

▶ 접수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(서류 접수) 및 수행 기관 온라인 접수 지원 제공

※ 문의 : 전남여수산학융합원 담당자(☎ 061)659-7786)

□ 제외대상

지원 제외 대상	
기 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</li> <li>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</li> <li>○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</li> <li>○ 기업 및 근로자 고정노동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</li> <li>○ 고용보험 체납기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</li> </ul> </li> </ul>
근 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용보험 미가입자</li> <li>○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</li> <li>○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, 석유화학산업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등 유사 사업 및 지원금 수급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으로 지원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○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 제외가 인정되는 자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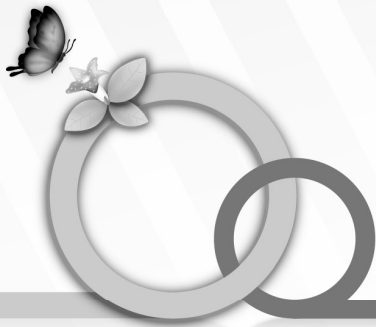
□ 제출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비 고	
필수 제출 서류	1	▶[서식1] 참여 신청서	
	2	▶[서식2]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	
	3	▶[서식3] 사업주 확인서	
	4	▶[서식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	
	5	▶[서식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근로자용)	
	6	▶[서식6] 부정수급 방지 안내	
	7	▶사업자등록증 사본(여수시 소재 사업장 확인)	
	8	▶사업장 총괄카드 ※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> 정보조회 > 정보조회 소개 >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(20101) > 화면 인쇄	
	9	▶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※ 과세기간: 2024년 ~ 2025년 ※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※ 홈택스 > 증명·등록·신청 > 민원증명 > 국세 민원 서류 찾기 >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및 발급	
	10	▶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발급범위: 전체근로자) ※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> 증명원 신청/발급 >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> 보험구분 [고용] 선택 > 사업장 관리 번호 입력 > 월 평균보수 포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> 증명원 출력 ※ (1회차 제출) 조회기간 : 2026. 1. 1. ~ 신청일 (현 취득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※ (2회차 제출) 조회기간 : 2026. 1. 1. ~ 지원 후 6개월 경과 시점	2회 제출
	11	▶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완납증명서 ※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	
	12	▶기업 통장 사본	
	13	▶지원항목별 구비서류(증빙자료) ※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	
기타 서류	▶석유화학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※ 거래관계서류(계약서, 세금계산서),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* *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> 국민소통 > 민원/조회 > 사업장관리번호찾기 > 사업장용 [고용] 선택 >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> 출력		

### 3

## 유의사항

- 본 공고의 지원일정,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
-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,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
-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
- 제출서류(신청서 등)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안내(문자, 메일 등)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
-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
-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름
-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
- 「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」 목록은 전남일자리정보망, 전남여수산학융합원 홈페이지 참조
- 홈페이지에 게시한 「여수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」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,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입증 가능



서식

**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 
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**

[서식 1]

『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 참여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
사업장 정보	사업장명	대표자	
	사업장주소	연락처	
	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

담당자 정보	담당자명	
	소속부서/직함	
	연락처	

석유화학분야 연관성	※ 여주시 소재 기업체(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석유화학업종(C19, C20, C22) 해당 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 내 석유화학업종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여주시 석유화학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외 관련된 기타업종 -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		
	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 (참고) 우선지원 대상기업 :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서 정한 기업		
우선순위	매출하락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   * 2024년 대비 2025년 하락 여부	
	매출하락액	2024년(            백만원) → 2025년(            백만원)	
	매출하락률	(            )%    *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	

신청 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 기여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보험료	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검진비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총액 ※증빙 서류 필수
	_____ 원	_____ 원	_____ 원	_____ 원	_____ 원

『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26년    월    일

기업명

(서명 또는 인)

(사)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

『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

성명	주민등록번호	지원내용				
		계	퇴직연금 기여금	사회 보험료	건강검진	기타
		원	원	원	원	원
계	명	신청금 :		원	기업명 : (인)	

## 『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 사업주 확인서

※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### 사업 참여 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

지원 제외 기업 (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)	
①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	[ ] 예 [ ] 아니오
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	[ ] 예 [ ] 아니오
③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	[ ] 예 [ ] 아니오
④ 기업 및 근로자 고정노동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	[ ] 예 [ ] 아니오
⑤ 고용보험 체납기업 ※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	[ ] 예 [ ] 아니오
⑥ 본 사업 「사업운영 공고문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	[ ] 예 [ ] 아니오

※ 본인은 위의 내용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·추가징수·지급제한·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[ ] 예 [ ] 아니오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기업명

(서명 또는 인)

(사)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

성 명 : \_\_\_\_\_ 사업장명 : \_\_\_\_\_  
 주민등록번호 : \_\_\_\_\_ 연락처 : \_\_\_\_\_

1.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 참여에 있어 개인(법인)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·관리하고 있으며, 제공하신 정보는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.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·이용기간	
		수행기관	중앙부처, 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연락처,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	본인 확인참여 자격요건 확인,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,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, 지역산업·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	신청 시점 ~ 지원 종료일로부터 만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및 제9조의2(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)를 근거로 수집합니다.
3.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,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4.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·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은 위 1~4의 내용에 따른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 참여·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/ 동의하지 않습니다.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동의자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**(사)전남여성수산학융합원장 귀하**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개인용)

###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4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사업자등록번호, (휴대)전화번호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### 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-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여부 확인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	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(휴대)전화번호, 참여기간, 사업자등록번호 등	수행기관	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### 3.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(연락처)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(사)전남여수수산물유통협회장      귀하

『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 부정수급 방지 안내

◆ **부정수급이란*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 하며 **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**를 받음

□ **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**

- ① **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**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- ② **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**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- ③ **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**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 **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**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《 **부정수급 사례** 》

**[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·제출]**

-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
-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
《 **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** 》
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[ ]에 [ ]아니오
② 본 사업은 <b>여수 석유화학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(건강 복지비)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</b> 하며, 중복신청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 *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 중복수급 불가	[ ]에 [ ]아니오
③ <b>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주민등록 및 신청일 기준 재직 기업에 근무 해야 함</b> 을 인지합니다.	[ ]에 [ ]아니오

위와 같이 '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'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기업 대표자 / 근로자 성명 : (인)

※ 수혜받는 대표자 및 모든 수혜 근로자 개별 작성(확인 후 삭제)

(사)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 귀하